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76
----------	-------

발의연월일 : 2025. 6. 30.

발 의 자 : 이광희 · 모경중 · 김문수
이재강 · 김우영 · 민병덕
임미애 · 이재관 · 박홍배
양부남 · 장종태 · 이해식
김상욱 · 문금주 · 이강일
김 윤 · 윤건영 · 박지원
이상식 · 안태준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과 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06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문화유산신탁법”이라 함)이 제정되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이 문화재청 산하 국민신탁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환경부 산하 국민신탁법인인 자연환경국민신탁에만 집중되어 국민신탁운동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지난 2021년, 문화유산신탁법이 개정되어 국민신탁법인 외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국민신탁단체’에도 국민신탁법인과 동등한 권한 · 의무 ·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환경부는 국민신탁단체를

지정함. 문화유산신탁법은 제15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보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신탁법인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과 국민신탁법인에 대하여 조세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개정되지 않아 국민신탁법인과 달리 신탁법인단체에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계속 부담되고 있어 신탁운동 활동에 제한이 되고 있음. 국민신탁단체가 취득한 보전자산은 사유재산처럼 처분이 불가능하며 법에 의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전해야 함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미개정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관련 세제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증대됨.

이에 국민신탁법인과 같이 국민신탁단체도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보전을 위해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 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53조).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중 “국민신탁법인이”를 “국민신탁법인 및 국민신탁단체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단체 등에 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 민신탁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 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 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 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 -----국 민신탁법인 및 국민신탁단체가 ----- ----- ----- ----- ----- -----.